

중랑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8~'22)

2018. 11.

중 랑 구

I . 기관현황

①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7년말 기준

- 조직 : 2담당관, 1추진반, 5국-28과, 1소-4과, 1의회, 16동

- 정원 : 1,260명

○ (예산) 5,657억원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9.0%, 재정자주도 46.3% * '18년 당초예산기준

②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중량구시설 관리공단	2003	100%	197명	153억원	주차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①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15,879	16,575
통합부채	186	181
1. 유동부채	54	87
· 이자부금융부채	0	0
· 기타유동부채	54	87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32	94
통합자본	15,693	16,394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지난해에 비해 696억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유동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임. 유동자산의 총액은 1,749억원으로 작년 대비 46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임. 비유동성자산의 총액은 14,826억원으로 작년 대비 22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 지난해에 비해 5억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비유동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임. 유동부채의 총액은 87억원으로 작년 대비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단기예수보관금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임. 비유동성부채의 총액은 94억원으로 작년 대비 3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장기예수보증금 등 기타비유동채의 감소에 의한 것임.

②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중량구청(일반회계)	출자금	1	중량구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중량구청(특별회계)	출자금	1	중량구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중량구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자본금	1	중량구청	자본금
중량구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자본금	1	중량구청	자본금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따른 출자금

③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15,876	16,572
통합부채	186	181
1. 유동부채	54	87
· 이자부금융부채	0	0
· 기타유동부채	54	8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32	94
통합자본	15,691	16,392

4 우발부채세부내역

-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5 부채상세분석

-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 해당없음
-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 해당없음

6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7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중랑구	일반미지급금	5	서울특별시	보조금집행잔액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8~'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1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통합부채 계	181	175	6	-	181	175	6	-
1. 유동부채	86	81	5	-	86	81	5	-
· 이자부금융부채	0	0	0	-	0	0	0	-
· 기타유동부채	86	81	5	-	86	81	5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	0	0	0	-
3. 기타비유동부채	94	94	0	-	94	94	0	-

○ 내부거래 내용

-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출자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통합부채 계	181	175	6	-	181	175	6	-
1. 유동부채	86	81	5	-	86	81	5	-
· 이자부금융부채	0	0	0	-	0	0	0	-
· 기타유동부채	86	81	5	-	86	81	5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	0	0	0	-
3. 기타비유동부채	94	94	0	-	94	94	0	-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②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현재 투자사업 및 향후 5년간 채무 및 선수금관리 및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 계획 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 약 상 약 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 우발부채 중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 지원 협약 내용 계획이 향후 5년간 없음.

나. 자치단체 : 해당없음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